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[김보경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(49)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25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 도일용 의원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증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전문분야별로 신속하게 심사·처리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임위원회의 설치(안 제3조)
- 나.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사항(안 제4조)
- 다. 상임위원의 임기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라.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마.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~제20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종류) 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.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5명
2. 정책행정위원회 4명
3. 복지건설위원회 5명

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2. 정책행정위원회
 - 가. 기획예산실, 법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나.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정책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읍·면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마.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바. 문화재산 소관에 속하는 사항

3. 복지건설위원회

- 가.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마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바. 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5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될 수 없다. 다만, 정책행정위원회 또는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6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할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을 둔다.

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8조에 따른 의장·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
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8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9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.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, 질서를 유지하고, 사무를 감독한다.

제12조(부위원장)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2장 윤리특별위원회

제14조(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위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의 선임 등은 제9조를, 부위원장의 선임 등은 제12조를 각각 준용하고,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
③ 윤리특위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사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개회의 통지) 위원장은 윤리특위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의원(이하 “심사요구의원”이라 한다)

2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대상자(이하 “심사대상의원”이라 한다)

제16조(심문) 윤리특위는 심사요구의원 및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되는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고, 이 경우 윤리특위 개최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해당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제17조(발언 및 변명)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발언 또는 변명을 하도록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8조(증빙서류 등의 제출)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윤리특위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19조(통고) 윤리특위의 의결에 대한 통지는 그 심사대상이 된 사실과 의

결내용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의
원에게 윤리특위의 의결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
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결 내용을 구술한 후
그 서면을 직접 교부할 수 있다.

제20조(제척과 회피) ① 윤리특위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
정되는 경우

2. 심사 안건에 관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
는 경우

② 윤리특위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
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.

③ 윤리특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
결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3장 보칙

제21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·의사
등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,
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
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윤리심사·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

출석대상 의 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연 락 처	
	출석일시		출석장소	
출석요구 사 유	※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			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
할 것을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□ 심사요구 등 의원발언신청서
신 청 서 □ 심사대상 등 의원해명신청서
 (※ 해당하는 곳에 ✓ 표시를 합니다.)

심사대상 의원 인적사항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연 락 처	
신 청 의 원	구 분	☐ 심사요구의원 ☐ 심사대상의원 ☐ 심사대상을 변호하는 의원		
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연 락 처	
발언(해명) 주요 요지	※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			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
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

□ 지방자치법 제62조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